

다우오피스 서비스형 이용약관 개정 안내

시행일 : 2018 년 10 월 30 일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|
| <p>제 17조 [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계산]</p> <p>5. (추가 신설)</p> | <p>제 17조 [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계산]</p> <p>5. <u>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용계약이 체결되고, 이용자의 관리자가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로 서비스 로그인 화면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된 시점(이하 "개설일"이라 합니다)부터 과금을 시작합니다. 단, 이용계약에서 별도 과금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</u></p> |
| <p>제 26 조 [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]</p> <p>1.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때로부터 2 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.</p> <p>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연속하여 2 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하여 2 시간 이상인 경우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</p> <p>② (동일)</p> <p>③ (동일)</p> <p>④ (추가)</p> | <p>제 26 조 [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]</p> <p>1.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(이하 "장애"라 합니다)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때로부터 2 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.</p> <p>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장애 시간이 연속하여 2 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이용자가 장애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하여 2 시간 이상인 경우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</p> <p>② (동일)</p> <p>③ (동일)</p> <p>④ <u>본 조에서 장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합니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회사의 귀책 사유로 다우오피스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못한 경우</u> - <u>회사의 귀책 사유로 메일 송수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</u> - <u>서비스에 데이터를 게시 또는 업로드 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내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하지 못한 경우</u> - <u>단,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 |
| <p>제 27 조 [면책]</p> <p>1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</p> | <p>제 27 조 [면책]</p> <p>1. (동일)</p> <p>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<u>메일 또는 데이터가 유출되거나</u>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</p> |
| | <p>기타사항</p> <p>약관 내용 중 중요사항은 강조 표시</p> |